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52651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75,443,757원 및 그 중
가. 456,185,517원에 대하여는 2022. 8. 24.부터 2022. 9. 7.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9,258,16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4.부터 2022. 11. 3.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5.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0. 접수 제25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9. 접수 제27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D'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피고 A은 2018. 11. 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보증금액을 45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11. 4.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와 피고 A은 제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20. 11. 3.로 연장하였다.

2) 피고 A은 2021. 2. 16.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보증금액을 19,000,000원, 보증기한을 2026. 2. 13.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이 2022. 4. 15.부터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2022. 4. 16.부터 E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각 연체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과 E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면서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기한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8. 24.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56,553,947원(= 원금 450,000,000원 + 이자 6,553,947원)을, 2022. 10. 14. E은행에 대출원리금 19,258,160원(= 원금 19,000,000원 + 이자 258,16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22. 8. 24. 피고 A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456,553,947원 중 368,430원을 회수함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456,185,517원(= 456,553,947원 - 368,430원)이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80원이며, 2019. 4. 1. 이후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은 2022. 5. 10.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은 2022. 5. 19.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2. 5.경 당시 피고 A에게는 시가

165,000,000원[= 330,000,000원(2022. 4.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 1/2(피고 A의 지분)]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450,000,000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E은행에 대하여 19,000,000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475,443,757원[=
456,185,517원(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 19,258,160원(E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 확정지연손해금 80원] 및 그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456,185,51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8.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 9.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E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9,258,16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10.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인 2022. 11.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비록 피고 A,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나 피고 A, 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 및 E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8. 24. 중소기업은행에, 2022. 10. 14. E은행에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A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F'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및 폐스크랩 처리업체(일명 고물상)를 운영하면서 2018.

8.경부터 피고 A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폐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는데, 2018. 8.

29.경부터 2021. 10. 2.경까지 사이에 피고 A에게 6차례에 걸쳐 선금을 지급하고도 2021. 8.경

이후 피고 A으로부터 폐자재를 인도받지 못함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73,000,000원 상당의

선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데다가 당시 피고 A의 채무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로써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 C가 선의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하성원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0층 호 84.984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대 39341.8㎡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9341.8분의 65.9652

